

『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2월 3일

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 상 곤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」는 「하천법」 제58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, 1999. 2. 8. 「하천법」 전부개정에서 ‘수익자 부담금’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하천법」 제58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전 천 수

- 본 「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」 은,
 - 「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」가 당초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, 상위법인 「하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‘수익자부담금’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